

NAJU  
*Web  
Contents*

2021년 09월 28일 11시 30분

# 목차

목차	2
주요농정시책	3
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안내	3

##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안내

2020.01.15    조회수 228    등록자 축산과

---

###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안내

□ '20. 3. 25.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 면적 1,500㎡ 미만은 부숙중기,

1,500㎡ 이상은 부숙 후기(완료) 등 퇴비화 기준 적용(가축분뇨법 제17조)

○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, 신고한 농가는 1년 마다 축사내 퇴비

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3년간 보관

○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농장에 발생되는 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외

○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

※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
이전글

2020년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향(요약)

다음글

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안내

---

COPYRIGHT © NAJU-SI. ALL RIGHTS RESERVED.

NAJU

# ***Web Contents***

